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VIETNAM BUSINESS TIPS

KOTRA자료 24-110



C O N T E N T S



I 법률

01. 베트남 법률상 정관자본금 납입	06
02. 베트남 자본금과 환율변동	08
03. 베트남 투자와 은행계좌	10
04. 베트남 투자 방식 안내	13
05.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절차	16
06. 베트남 산재처리 절차	18
07. 베트남 토지법개정안	20
08. 베트남 채무불이행 소송 진행 시 검토사항	23
09. 베트남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비교	25
10. 베트남에서의 유언	28
11.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의 보고의무	31

II 세법

01.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탄	34
02.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탄	37
03.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3탄	40
04.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4탄	42
05.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5탄	44
06.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6탄	46
07.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7탄	48
08.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8탄	50
09.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9탄	53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C O N T E N T S

III

통관

01.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동향	58
02.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정의와 활동 범위	60
03. 수출입물품 비특혜원산지 규정 개정	62
04. 농업농촌개발부 전문검사 대상 물품 축소	64
05. 통관 분야에서의 업무 위험 관리 규정 개정 사항	65
06. 규제물질 포함 제품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67
07. 베트남 건강기능식품의 구분과 통관	68
08. 면세 원재료 용도 변경 시 FTA 적용 여부	70
09. 베트남 관세총국의 EPE 관련 문의 공문 요약	72
10. 베트남 수출을 위한 라벨링 제도 안내	74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



법률

”



I
법률

01

베트남 법률상 정관자본금 납입



정관자본금

베트남 기업법 제47조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자본금은 법인설립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법률상 약정된 현금출자 금액 및 현물출자 비용을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관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는지 여부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 완납 여부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정관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관자본금 납입 방법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 설립에 앞서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투자프로젝트 신청시에 정관자본금 납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상 현물출자 납입 방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기에 현물출자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출자를 변태설립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법과 달리 베트남 기업법은 현물출자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기계설비, 토지사용권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백이 많아 실무적으로 현물출자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계설비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자체보다는 출자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계설비 감가상각 및 이후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설정된 설비이므로 자본금 감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법상 자본금 감자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아니하나,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법상 투자프로젝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자의 경우 투자프로젝트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인허가 관청의 승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우선 출자하시고 해당 설비를 구매하시어 자산으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I
법률

01. 베트남 법률상 정관자본금 납입

정관자본금 납입 기한

정관자본금은 기업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의 경우 일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출자자의 경우 출자 지분만큼만 그 권리가 인정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출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권리를 박탈하며, 납입하지 못한 지분에 대한 감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납주주가 납입기한을 초과하여 납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등록증상 납입기간연장 승인을 진행하여 납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감자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다시 기업법과 투자법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상 감자절차와 별개로 투자프로젝트상 출자를 진행하지 못한 투자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승인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바, 이는 전체 프로젝트 이행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미납주주 뿐만 아니라 회사 및 납입을 완료한 주주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대안으로, 감자절차 대신 납입을 완료하지 못한 주주 대신 다른 투자자가 해당 지분만큼 대납하여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또는 제3투자자에게 해당 투자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프로젝트 이행 안정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기업법 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법 규정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불필요한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

02

베트남 자본금과 환율변동



들어가며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증(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과 사업자등록증(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등록증에는 납입자본금이, 사업자등록증에는 정관자본금이 각 기재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계좌를 USD로 개설할 수 있기에 자본금 계좌에 USD로 납입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의 투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 자본금은 USD외에 VND가 함께 기재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VND와 USD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VND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증상 VND와 송금시점 USD 환율에 따른 VND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근 몇몇 시성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본금 미납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문제상황

예를 들어 등록증상 1USD에 해당하는 환율이 24,450VND를 적용하여, 100만달러 자본금을 신청한 회사의 등록증상 VND자본금이 24,450,000,000VND로 기재되었고, 실제 100만달러를 전액 납입하였지만, 해당 또는 어떠한 기준일 환율이 변동하여 24,450VND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상 VND기준 자본금은 24,450,000,000VND이고, 100만달러를 모두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시점 환율이 변동하여 23,450VND인 경우, 납입된 자본금은 23,450,000,000VND로 10억VND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USD기준으로는 전액 납입이 되었기에 자본금은 완납 되었어야하나, VND환율 차이로 인해 VND는 서류상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기에 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미납된 VND를 송금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해외투자신고를 USD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본금 계좌 또한 USD로 개설되어 있어 미납된 VND를 송금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반대로 적용한다면 VND환율이 신청한 시점보다 상승한 경우, 가령 25,550VND가 되었다면 자본금이 10억VND만큼 과 납입되었으니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납입 거래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일부를 송금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즉, 신청서 작성 시점 USD와 VND를 병기하는 것은 실제 납입시점 - 미래의 어느 한점의 USD-VND환율의 변동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주 우연히 그 시점의 환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반드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차이를 자본금 미납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

02. 베트남 자본금과 환율변동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USD든 VND든 어떤 하나의 통화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몇몇 기관에서는 미납된 자본금만큼 추가로 납입을 하거나 - 추가납입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불가능합니다, VND자본금을 감소시킬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작업을 한차례 더하는 것 또한 가능하나 현실과 너무나 괴리된 주장이며 반대로 환율이 증가하여 VND가 더 많이 납입된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안 및 소결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서상 USD - VND환율을 보수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환율이 $1\$=24,450\text{VND}$ 이라면, $23,000\text{VND}$ 과 같이 보수적인 환율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와 같이 환율이 대체로 작게 변동하며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USD의 자본금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USD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했고, 자본미래의 변동하는 시점의 VND 환율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극소수의 몇몇 공문이 자본금 납입을 VND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례를 제외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기관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안이 어렵지 않기에 안내 드리며, 추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등록증 변경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

03

베트남 투자와 은행계좌



서설

베트남 투자법상 베트남에서 수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베트남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출장 비용을 포함하여 오피스, 건물임대비용, 토지사용권 취득비용, 법무법인 자문료 등 여러 가지 설립준비비용이 필요하나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설립준비비용은 개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한국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된 설립준비비용들은 나중에 해당 지급비용들이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 실제로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역외계좌’라는 것을 개설하기도 하고, 나중에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나서는 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또 별도 운영계좌 등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은행 계좌의 종류 및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은행 계좌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경우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는 은행 계좌의 종류는 자본금계좌(DICA), 역외계좌(DDA), 일반운영계좌(DDA)가 있을 것입니다. 세가지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역외계좌와 일반운영계좌는 동일한 일반 입출금 계좌로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역외계좌의 경우 한국 법인 명의의 베트남 은행에 개설된 계좌라는 의미에서 역외(외국)계좌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 주식을 하시는 경우 간접투자계좌(IICA)를 개설하신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개설하는 사용되는 해외직접투자계좌(ODIC)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니 이번 칼럼에서는 자본금계좌, 역외계좌, 일반 운영계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역외계좌 (Offshore account - Demand Deposit Account) ※

역외계좌는 일반 입출금계좌로서 명의인이 한국 법인이며, 베트남 은행에 개설되었다는 의미에서 역외계좌라고 부르나 사실은 일반 입출금계좌에 해당합니다. 역외계좌를 사용하는 목적은 법인설립준비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신청을 할 주소지를 정해야 하고 때문에 사무실이든 공장부지든 부

03. 베트남 투자와 은행계좌

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해야 하는데 토지주, 건물주 입장에서는 누가 돈을 지급하나 상관이 없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를 출자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차후 부가세 환급 등을 신청해야 하므로 적절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대표님, 법인장님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자본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먼저 베트남 역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둔 뒤, 투자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직접투자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

직접투자계좌(DICA)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계좌이기에 자본금 계좌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사용되는 계좌입니다. 이 직접투자계좌는 1개의 외화로 지정하여 단 하나의 은행에 하나밖에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은행으로 직접투자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직접투자계좌는 폐쇄해야 합니다. 직접투자계좌는 자본금 납입, 역외대출(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대여금을 송금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투자계좌 외에 운영계좌라고 하는 일반입출금계좌를 개설하시는데, 일반입출금계좌도 USD로도 개설이 가능하여 두 계좌의 차이를 크게 고려치 아니하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자본금납입, 배당금지급, 역외대출금 차입 등은 반드시 자본금계좌를 사용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일반운영계좌로 지급받았을 경우, 적법한 해외대출이 아니므로 향후 상환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일반운영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수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용되는 경우는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현행법령상 비거주자간의 지분양수도 거래는 직접투자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한국 회사이고 베트남 법인을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DICA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M&A를 진행하시는 경우 양수도인이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회사가 내국법인인지 외투법인인지에 따라 사용하셔야 하는 은행 계좌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03. 베트남 투자와 은행계좌

※ 일반 운영계좌 ※

일반 운영계좌는 직접투자계좌와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계좌이며, 법률에서는 특정 계좌를 사용하도록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모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운영 경비, 상거래 채권채무 지급, 급여지급, 매출에 따른 대금수령 등 대부분의 목적에 사용되며, USD/VND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직접투자계좌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좌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반드시 직접투자계좌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

04

베트남 투자 방식 안내



서설

현재 베트남에는 여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하여 제조, 부동산, 골프, 레저, 유통업,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여러 방식으로 진출이 가능하나 그 진출이 가능한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사무소, 법인설립 등이 있으며,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진출 방법에 따른 각 특징, 기업법상 법인 형태별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투자 방식 검토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대표사무소, 법인설립, 프로젝트오피스, 지점설립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프로젝트오피스는 종료가 예정된 건설프로젝트의 경우에 설립이 되며, 지점의 경우 별도 법인격이 없는 외국투자자 본점에 종속되는 형태로 은행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설립이 허용됩니다. 즉, 일반 외국인 투자자가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안은 대표사무소와 법인설립 두가지 방안으로 제한됩니다. 대표사무소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자본금 납입이 불요하고 본사 송금을 통한 비용지출만이 가능합니다. 즉, 베트남에 별도의 독립된 사업계획이 없고 직원의 현지 파견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가 매우 어려운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직원의 현지 파견이 필요한 경우 등 베트남 현지에 직원 파견이 목적인 경우 대표사무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만 활동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설립절차가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각 업종별로 주무부서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의 경우 계획투자국이 주무부서가 되어 큰 어려움 없이 설립이 되지만, 금융기관, 운송업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 중앙은행, 재무부, 교통부 등과 같이 주무부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주무부서 검토가 필요하여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04. 베트남 투자 방식 안내

대표사무소는 주무부서 승인 외에 세무코드를 발급받는 세무등록증 발급절차가 필요하며, 대표사무소 인감 발급이 필요합니다.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세무관련 이슈입니다. 대표사무소는 본사에서 전도금을 송금 받아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 수익이 없어 법인세가 발생하지도 않고, 부가세 환급이 없어 부가세 이슈도 없는데 세무이슈가 무엇이나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대표사무소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은 적절한 비용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사무소장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영수증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법인 형태별 차이

※ 법인 설립 절차 ※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는 (1) 투자등록증 발급 (2) 사업자등록증 발급 (3) 인감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도 그 업종 및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는 경우 투자등록증 발급에 앞서 관할 기관 - 국회, 총리, 시성급 인민위원회 등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로 설립이 진행되며, 설립 후 영위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추가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업의 경우 임대업 라이선스가 별도로 필요하고, 유통업 매장을 오픈하시는 경우 각 상점마다 별도의 리테일 매장 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제조업과 같은 경우 크게 이슈가 있지는 아니합니다만, 자연, 환경, 소방,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 염색 관련 업종, 폭발 위험성이 있는 업종 등의 경우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과정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법인 형태별 차이 ※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국 본사 단독 투자, 개인투자 등으로 진행되어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라는 형태가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나 설립 난이도에 차이가 있거나

04. 베트남 투자 방식 안내

기간이 특별히 더 소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 기업법이 주식회사 설립에 투자자 3인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서 해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3인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1인유한책임회사만 선택할 수 있어 1인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3인 요건을 맞출 수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

05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절차



서설

베트남 의료는 공공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이념에 따른 무상의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요와 대비되는 무상의료는 자연스레 의료 행정 절차의 비효율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로 충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병원 등의 난립, 의사들의 개인병원 개업 등을 통해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민간의료시장은 공공의료시장에 비해 좋은 서비스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비해 더 높은 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영리병원, 의사가 아닌 자의 병원 소유 등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 시장 참여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나 아직까지 부족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성장하는 시장이며 부족한 만큼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다. 특히 진단 여력이 많이 떨어지고 작은 병원들이 난립하고 있기에 대형 병원으로 한 대형 의료기기 외에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한 소형 의료기기, 진단기기 시장의 발전이 상당하다 생각됩니다.

의료기기 수출입 안내

베트남에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자 및 수입대상 품목에 대한 인증 그리고 수입자의 베트남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 제조자의 요건 ※

제조자는 ISO 13485 및 판매증명서(CF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 베트남 수입 시 필요한 제조자의 정보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 ※

시행령 98/2021/ND-CP 제 22조 및 시행령 07/2023/ND-CP 제1조2항에 따라 베트남에 등록된 기기여야 합니다. 베트남은 의료기기를 Class A부터 Class D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분류단계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국내 자체 인증보다 국제 인증을 준용하는 절차를 선호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국제 인증을 취득한 뒤 베트남에 수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간이합니다.

05.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절차

※ 수입자의 요건 ※

의료기기 인증절차는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즉, 위 제조자의 요건, 의료기기 요건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인증을 진행하여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수입자가 진행한 인증은 수입자에게 귀속되나 이는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즉, A라는 품목을 어느 회사가 인증하여 등록하였다면 A라는 품목은 해당 회사만 수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회사가 동일 품목으로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 의료기기 유통법인 설립 절차 ※

의료기기 유통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베트남에 법인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곧바로 판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수입인증절차를 통해 그리고 독점 유통권 확보를 통해 베트남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유통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기 유통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투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수입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만일 리테일 상점이나 소매판매를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서브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

06

베트남 산재처리 절차



들어가며

한국 기업들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회사뿐 만 아니라 직원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100% 담보할 수 없으며, 불행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판단 기준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8항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대해 업무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체 부위 및 기능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관련 규정인 시행령 제39 제9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사망 업무상 재해(직원의 사망을 초래한 산업재해) ※

다음 중 하나의 경우로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사고입니다.

- a) 사고 현장에서 사망;
- b) 응급실로 가는 도중 또는 응급 상황 중 사망;
- c) 법의학 검사 기록 결과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 중 사망 또는 상처 재발로 인한 사망;
- d) 직원에 대한 법원의 실종 선고에 따른 사망 선언

※ 중대 업무상 재해 (직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산업재해) ※

사고 결과 직원에게 시행령39/2016/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II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경미한 업무상 재해 (직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산업재해) ※

사망 업무상 재해 혹은 중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즉, 베트남은 산업재해의 분류를 사망 / 중대업무상재해 / 경한업무상재해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망 또는 중대업무상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 대해 경한업무상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06. 베트남 산재처리 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 사례보고서 제출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관련 시행령 39조의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경우에 따라 관할 당국에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의 특성 및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보훈사회국의 노동부 감사관 그리고公安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 재해의 경우 2명 이상의 직원이 중대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公安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경미한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

산업안전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6개월에 1번 그리고 매년 산업재해 및 심각한 안전 위험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7월 5일 이전, 연간보고서의 경우 1월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시 노동자 또는 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 종결이 가능한지 ※

베트남 법률은 각 사고발생시 보고의무를 두고 있으며, 합의 여부는 보고의무를 면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타 사업주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합의는 처리과정에서의 적절성 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외에 사업주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07
베트남 토지법개정안

들어가며

지난 1월 토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자본경제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색 있는 법률은 토지법이라 할 것입니다. 사유재산과 공산주의간 조화를 추구하는 베트남의 토지법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개별 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독특한 구조로 발전되었는데, 시장경제주의를 받아들인 현재에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한 취지가 어느정도 반영된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규정 발표 이후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은 토지법 개정안의 대략적인 틀을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 토지법 개정안 변경점

※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국내중재제도 인정 ※

현 토지법은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로 인민위원회와 베트남 법원만을 관할로 두고 있었습니다. 인민위원회가 어떤 이유에서 분쟁 해결기관으로 인민위원회가 관할 기관으로 존재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행정심판제도와 조세심판원과 같이 행정과 관련한 분쟁해결 기구로 행정부가 그 관할 기관에 포함된 것을 생각해보면, 토지에 대한 분쟁을 기본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대리하는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자 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신 토지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진 것은 아니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국내중재제도를 분쟁해결 방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와 같이 외국중재는 여전히 인정되지 아니하나, VIAC과 같은 베트남 국내중재센터를 통한 해결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외국투자기업 정의의 명확화 ※

현재 토지법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명확하지 아니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투자법인인 100% 외투법인, 합작법인, 외국인이 지분을 취득한 법인 등으로 되어 있어 지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신법은 투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 체계상

07. 베트남 토지법개정안

그 정의가 통일되고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투자법 제23조)

※ 토지 평가 시기의 변화 ※

현 토지법은 5개년마다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차이가 커 공시지가가 실제 토지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여러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법은 매년 평가를 하고 매년 발표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토지인센티브를 받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추가 ※

현 토지법은 토지인센티브를 받는, 즉 토지사용료를 면제받거나 하는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만, 토지 인센티브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자 범주 확장 ※

이부분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현 토지법상 부동산 담보는 반드시 금융기관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인간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또한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위해 미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토지사용권증서를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등과 같은 여러가지 편법이 진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거래행위이기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장의 요구와 법률이 달라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자 범주가 확장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공단, 하이테크 공단 등에 50년 사용권을 받아 입주한 기업들은 금융기관 외에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에 위치한 은행 등 - 신한, 우리은행과 같이 베트남에 진출한 은행이 아닌, 외국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국가로부터 임차 받은 연간 임대토지의 계약상 토지임차권 인정 ※

현재 토지법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사용권만을 인정하기에 일종의 계약적 권리로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권이 인정

07. 베트남 토지법개정안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권리에 많은 이익이 담겨 있음에도 이를 양도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신 토지법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양도를 어느정도 허용하는 취지로 법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단분양과 같은 공단과 사용권을 계약한 경우와 같은 경우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부 시행규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

08

베트남 채무불이행 소송 진행 시 검토사항



미스채권회수 분쟁에 관하여

Covid-19로 인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채권 채무와 관련한 여러가지 분쟁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제 거래상 발생한 미수채권의 회수 방법에 관해 다양한 문의가 있어, 이번 법률 칼럼에서는 베트남 내 채권회수방안에 대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성립

계약상 채무의 이행 -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의 지급 -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쌍무계약상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상대방의 대항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베트남 내 소송 진행 시 고려 사항

대금지급 청구와 관련한 베트남 내 일반 상거래에서 법적 절차 검토를 요하는 채무불이행의 발생은 매우 명확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모습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물품의 하자 발생 등이 상호간에 주장되기도 하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상거래에서 이러한 사안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간에 협의를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실무적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인

베트남에서 채권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및 책임재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08. 베트남 채무불이행 소송 진행 시 검토사항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법원에 요청하시는 경우, 법원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 및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지 확인

계약서 상 해당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법원간 이송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해야 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또한 뉴욕 협약에 가입하였기에 중재심판소의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법무부 등록 중재원이 아닌 해외 뉴욕 협약 체결국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베트남 영내 집행 절차 전 베트남 법원의 해외 중재 판정 집행 심의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전체적인 재판절차 및 재판 비용에 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재판 증거 검토

베트남 법원은 분쟁의 내용만큼 형식의 적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같은 경우 한국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서명권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해당 계약에 대한 위임장이 정확히 존재하는지, 공증을 요하는 거래에 공증이 이루어 졌는지, 상호 회의를 하였다면, 회의에 참석한 자가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회의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등 형식적 적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단분양과 같은 공단과 사용권을 계약한 경우와 같은 경우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부 시행규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

09

베트남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비교



들어가며

베트남은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에게 투자를 개방하고, 현재까지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베트남 내국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WTO 조약국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시장개방,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몇가지 투자법상 제한 등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인허가 절차에 따라 몇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하여, 제가 업무를 하며 겪었던 실무적으로 베트남 내국인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몇가지 사례들

• 최저자본금

베트남 법률상 특정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지나치게 작은 규모인 경우 프로젝트 기간이 짧게 허가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입지선정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 주소지에 대해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인지에 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사업법상 어떤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이 실존해야 하고, 사용가능해야 하며, 부동산이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 - 토지사용권 증서 발급 - 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업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업을 위한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었고 최소자본금이 200억 동에 달해 임대업이 없는 임대인이 이슈가 되었지만, 최소자본금 규정이 제외되어 임대인의 임대업 요건은 큰 이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임대업이 없더라도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요건은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건물에 대한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증서가

09. 베트남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비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인의 경우 임대계약 체결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무감사 등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투자자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좀 더 투명한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맞다 할 것 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베트남 투자자들 또한 동일한 세법규정, 회계 원칙에 따라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 외 외국인 투자법인은 세무감사를 더 자주 받는다는 것과 같은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규모가 베트남 내국인보다 크고, 거래규모도 더 많은 경우가 많은 등 다양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긍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무감사 등은 세무당국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투자자는 3년에 한번, 어떤 투자자는 10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동일한 업종, 동일한 규모로 외국인투자 / 내국인 투자를 비교해야 할 것 입니다만, 한국인들이 내국인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은 차명투자를 하였다는 이야기이기에 이 두가지 케이스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합니다.

• 투자등록증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신청하고, 투자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투자와 가장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투자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는 실제로 내국인 투자와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내국인 투자자는 기업법의 적용만 받게 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법과 기업법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을 이사하려고 하는 경우, 내국인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면 변경하면 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이전에 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새로운 위치에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 받게 되는데, 간단한 사유라도 모두 투자등록증 변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과 시간이 더욱 많이 소비됩니다. 또한 내국인 투자자는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09. 베트남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비교

사용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투자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이는 기존 프로젝트와 다른 금액이므로 회사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금만을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내국인투자자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몇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신고 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즉, 한국인투자자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투자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모두 투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에 대한 투자등록증 발급 면제 등을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10
베트남에서의 유언

베트남에 거주하며 베트남에 자산을 가진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유언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베트남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인 상속인에 대해 유언으로 사후 상속 자산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관계에 해당하는 유언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민법 제663조 2항은 참여당사자중 최소 1인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민법 제681조 1항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의 경우 유언을 작성, 변경,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은 유언자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에 대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대해 베트남 민법 제681조 2항은 유언을 행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민법상 유언 관련 규정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민법 제629조, 제631조, 제634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법상 유언의 방법

※ 구두 유언 ※

베트남 민법상 구두 유언은 제629조 및 제630조 5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생명이 위태로워 서면 유언이 불가능 한 경우 구두 유언을 할 수 있으며, 구두 유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후까지 유언자가 생존하고 정신이 온전할 경우 구두 유언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구두 유언자는 최소 2인의 증인 앞에서 최종 유언을 하고, 구두 유언자가 최종 유언을 한 직후 증인이 이를 녹음하고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합니다. 구두 유언자가 최종 유언을 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공증인 등으로부터 증인의 서면, 지문을 통해 유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증인이 있는 서면 유언 ※

민법 제6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인이 있는 서면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인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하며
- 유언 작성자는 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합니다.
- 증인은 유언자의 서명과 지문을 확인한 후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10. 베트남에서의 유언

- 증인은 유언 또는 유언자의 법률에 따른 상속인, 유언의 내용과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 미성년후견인,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등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증인이 없는 서면 유언 ※

민법 제6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는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공증 유언 ※

유언자는 유언장의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6조에 따른 공증 유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을 공증할 공증인 또는 인민위원회에 선언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자가 진술한 의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이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유언자의 의사가 충실히 표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 공증인은 해당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장을 읽거나 들을 수 없거나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 또는 인민위원회 위원 앞에 해당 유언장에 서명하여 이를 인정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인증할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 또는 공증인은 유언자와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장을 공증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법률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은 유효하며, 더불어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하는 동안 사기, 협박, 강요를 받지 않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유언을 작성하였어야 하며, 유언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유언의 형식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언은 유효하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재산이 있는 한국인 또한 베트남의 법률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내국인투자자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신고 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즉, 내국인투자자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투자

10. 베트남에서의 유연

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모두 투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에 대한 투자등록증 발급 면제 등을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I
법률

11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의 보고의무



들어가며

한국에서 해외투자신고를 통해 베트남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 외국인 은행을 통해 해외투자 신고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베트남 투자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행위 및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바, 최근 투자국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의 이러한 보고의무 준수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보고의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M&A, 증자, 업종추가 등 인허가 변경에 여러가지 장애가 되고, 보고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과태료 및 미이행된 보고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보고의무가 복잡하지는 아니하나 상당히 양이 많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행정 제재결정이 많이 늦어져 필요한 인허가 일정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고의무를 그동안 잘 이행해 오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외투기업의 보고의무 유형

※ 정기 투자 활동 보고 ※

투자법 제42조3항 및 투자법 제72조 1항에 따라 분기/ 연간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FORM A.III 1 및 FORM A.III 2 양식에 따른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베트남 국가 투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양식은 대부분 재무적인 사항 - 투자내역 및 대출금, 이익, 비용, 세금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의 경우 해당 분기 다음월 1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연간보고서의 경우 보고년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정기 투자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

투자법 시행령 29/2021/ND-CP 제 96조 2항에 따른 보고이며 반기 및 연간 보고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양식은 FORM 13 및 17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하며 프로젝트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치, 규모, 토지사용면적, 프로젝트 건축상황, 이행상황, 투자자본금, 정관자본금을 비롯하여 자본금, 금융기관 대출을 비롯한 각종 재무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11.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의 보고의무

제출기관은 공단의 경우 공단관리위원회, 일반 기업의 경우 계획투자국입니다. 반기보고서의 경우 7월 10일 전에, 연간보고서의 경우 다음해 2월 1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투자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

투자법 시행령 29/2021/ND-CP 제100조8항 및 제100조1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정 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양식 15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기관은 공단내 프로젝트의 경우 공단관리위원회, 그 외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계획투자국입니다. 작성 내용은 재무에 관한 사항, 토지 근로, 건설진행상황, 기타 대여금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 회계감사보고서 ※

시행령 17/2012/ND-CP 제15조1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반드시 외부감사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시행규칙 200/2014/TT-BTC 제109조2항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공단관리위원회 및 계획투자국입니다.

마치며

최근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보고의무를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등록증 등 인허가 변경시에 보고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이행된 경우 진행하던 인허가 업무가 중단되고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보고서는 부담스럽지 않으나 여러분기, 여러해 그리고 여러 보고서들이 누락된 경우 이를 다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하고 있어 미리 이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



세법

”



II
세법

01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탄



들어가는 말

지난달까지 2023년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등 재경업무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각 법인에 근무하시는 재경관리 담당자, 현지인 관리직원 및 법인장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호부터는 베트남의 세법 및 세무행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꽤 적지 않은 법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으로는 올해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세금이 존재하고 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명공동체로서의 세금

혹시, 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우측 사진)의 말입니다. 혹시, 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직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에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설령 세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납부하기를 원한다는 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세금을 싫어할까요? 우리가 세금을 싫어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현상일까요? 인류역사에 세금이 존재해온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세금의 역사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니 역사적인 이야기는 차치하기로 하고 몇 가지 재미있는 예들을 잠시 들어보자면, 17세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라는 것이 있었고, 19세기까지 영국에서는 ‘창문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대로변에 접해 있는 집의 정면폭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으니, 이러한 결과로 정면은 폭이 좁고 뒤로 길쭉한 기형적인 집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베트남의 집들이 입구 폭보다는 뒤로 길쭉한 형태를 보이는 이유가 프랑스식 집의 형태를 본받다 보니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뭐가 되었건, 얼마나 되었건 간에 우리는 세금 내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II 세법

01.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탄

2024년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세금이 싫습니다. 지난 십 수년간 베트남에서 회계법인을 운영하며 느끼는 점은 유난히도 많은 법인들이 베트남에 세금을 내는 것을 보다 더 싫어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왜 그럴까요?

베트남에서 세금이란?

우선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하는 세금 및 세금과 유사한 것들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법인세 ②부가세 ③소득세 ④외국인계약자세 ⑤수입관세 ⑥주식/지분양도세 ⑦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⑧재해방지기금 ⑨노동조합 지원비 ⑩ 라이선스비 ⑪자산등록세 등이 있고, 이외 특정활동에 따라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수출관세, 환경보호세 및 재산세 등 다양한 조세 및 공적 성격인 준조세 등이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 있는 법인들이 위와 같이 많은 세금을 직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일을 하던지 간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이미 체득되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베트남에서 이렇게까지 큰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베트남 과세당국의 무분별한 세무행정체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각 법인들마다 정확한 납부대상 세액의 계산 및 절차 등에 대한 학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베트남 과세당국의 세무행정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어 두기로 하고, 왜 각 법인들마다 정확한 세무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번째로, 우선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 함은 무슨 기장 프로그램 내지 ERP와 같은 거창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담당 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조/생산법인의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다 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산관리, 품질, 납기, 단가 등에 대해서는 많은 주재원 및 현지인 직원들이 상당수준 깊이 관여가 되어 있으나 재경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단지 몇 명의 현지인 경리직원과 경리장에게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선 신뢰를 가져야 함은 마땅하겠으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실수나 잘못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터링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한국투자법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I
세법

01.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탄

두번째로, 베트남의 회계 및 세무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외부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외부 실무교육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고 관련 자격증 과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퇴근 후 학원강의를 통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우면 온라인 강의로 재경업무 실무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의 경우는 임직원들을 위한 내부 교육프로그램 등이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지요. 설령,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다못해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그러한 여건 및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II
세법

02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탄



들어가는 말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인 세무조사

베트남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그러나 결코 반갑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세관조사 및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으로부터의 각종 조사들일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좀 지내다보면, ‘남들은 몇 년동안 조사를 만나온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우리 법인에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인지?’, ‘작년에 와서 세무조사를 다 했는데 올해 또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건지?’ 또는 ‘한번 조사를 나왔는데 빨리 끝낼 생각도 안하고 계속 괴롭히기만 하는지?’, ‘부가세 환급 조사까지 다 끝내고 환급을 받았는데 왜 세무조사시 부가세 환급을 잘못 받았다고 벌과금까지 납부하게 하면서 환수해가는지?’ 등등 많은 궁금증과 속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위 몇 가지 문장들로서 많은 한국투자기업들이 갖고 계신 답답함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테니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무조사라는 것이 뭘 하자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이해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종류

우선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하는 세금 및 세금과 유사한 것들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법인세 ②부가세 ③소득세 ④외국인계약자세 ⑤수입관세 ⑥주식/지분양도세 ⑦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⑧재해방지기금 ⑨노동조합 지원비 ⑩ 라이선스비 ⑪자산등록세 등이 있고, 이외 특정활동에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형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요약하여 분류한 표입니다.

02.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탄

세무조사의 분류		비고
구분	종류	
1. 조세범칙혐의 유무에 따른 분류	일반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유형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처분(고발 또는 동고처분)
2.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에 따른 분류	정기조사	4~5년 순환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
	비정기조사	탈루혐의가 있을 때 수시로 실시
3. 조사 세목의 통합여부에 따른 분류	통합조사	여러 세목을 통하하여 하는 조사
	세목별조사	부가가치세 등 특정세목에 대한 조사
4. 조사대상 범위에 따른 분류	전부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전부분에 대한 조사
	부분조사	특정세목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이지만 우리나라의 세법체계를 본따서 기본틀을 형성한 베트남의 경우도 대부분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교과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현행 세법에 맞게 신고 및 납부를 기한내 이행을 하였다면 그 어떠한 세무조사를 수검 받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나 베트남 어느 곳에서라도 세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또는 실수로 부정확하게 세금이 계산되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의도적인 행위도 빈번 하구요. 상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행 세법에 부합하는지 불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보자면, 소위 ‘옳고 그름’의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2017년 이후부터 보다 강화된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형태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있는 매출처 및 매입처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특수 관계자로서가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입니다.

아울러,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의 대상기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세무조사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끝냈다고 하더라도 추후 동일한 기간에 대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가지 세무조사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증빙자료 및 세액산출에서 오류가 없고, 신고/납부

02.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탄

기한을 잘 준수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경우는 비록 제반 세법규정을 잘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일종의 부당하고 인위적인 이익의 이전이 있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기 서로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II 세법

03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3탄



들어가는 말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대처방법_조사의 시작점에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의 지난 경험에 비추어 약간의 농담을 섞어 이야기하자면 ‘당황하기 또는 화내기’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거래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는데, 물론 자력으로 조사대응이 마땅치가 않다면 조력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의외로 이런 조력을 구하는 간절함을 역으로 이용하는 조력자도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수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행동요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대상 세금의 범위 파악, ②자료준비사항 파악, ③자력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 파악, ④회의실 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세무조사관들이 조사대상 법인을 방문하였는데 법인내 사무실도 지저분하고 회의실도 마치 창고처럼 어질러져 있으며 담배꽂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제출하는 서류파일들도 중구난방으로 뒤섞여 있다면 과연 조사관들 입장은 어떠할까요? 이는 단순히 조사관들이 손님으로서 느끼는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법인의 내부상황이 이러하다면 과연 이 법인이 기장/결산/세무신고 등은 제대로 깔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뭔가 오류나 잘못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후자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첫인상이 바로 세무조사의 난이도 및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II

세법

03.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3탄

세무조사를 자력으로 수검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거래를 누구와 얼마만큼 하였는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법인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리장 또는 경리직원의 변경, 기장/결산/세무신고 외부대행 여부 등에 따라 자력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조력자로서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법인은 전문가로서 고객사에게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는데, 현실세계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조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는 점과 조력에 따른 수수료의 수준 역시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각 법인들은 현재 거래중인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파워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그 파워에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즉, 우리 법인에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회계법인의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 수월하게 난국을 헤쳐 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나, 과연 그러한 네트워크 파워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회계법인이 각 지방세무서 공무원들과 돈독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목관계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해공동체인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계법인이 이러한 네트워크가 없으면 수월한 세무조사 수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서 회계법인의 네트워크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불러들이게 되는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조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해보고 과연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II
세법

04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4탄



들어가는 말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대처방법_조사의 시작점에서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 각 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대응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현재 거래중인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방법을 선택한 이후, 세무조사관들의 방문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세무조사관의 입장이라고 가정해보면 여러분들이 조사대상 법인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지난 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를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인상’입니다. 설령, 그동안의 결산이나 각종 세무신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첫 인상이 깨끗하고 단정하다면 의외의 반전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역시나 법인 사무실내 청결상태가 정리정돈상태가 지저분하다면 예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 다음으로 각 법인들이 당장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은 바로 조사 첫날 조사관들에게 얼마씩 돈을 주면 좋을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골프라는 운동을 즐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골프 라운딩을 나가게 되면 통상 라운딩이 종료될 때쯤 라운딩을 도와준 고마운 캐디들에게 팁을 얼마씩 주면 좋을까를 잠시 고민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각 골프장의 수준별로 정해져있는 캐디팁이 있을 것이고, 만약 플레이어가 초보라면 아무래도 캐디가 더 많은 수고를 해주었을 테니 남들보다는 캐디팁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것일 테죠. 여기서 문제는 캐디로서 형편없었던 캐디에게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캐디팁을 주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라운딩을 시작할 때 미리 캐디팁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세무조사관들의 방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캐디팁을 언급하는 것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첫 날 조사관들에게 마치 우리 법인을 잘 좀 봐달라는 의미로 일정 소액을 지급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과 유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II 세법

04.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4탄

그렇다면, 조사관들에게 조사개시 첫날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 마지막 날 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천만에요...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조사 첫날부터 일정 금액을 봉투에 담아주는 것은 아무래도 조사를 나온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 때문이지요. 첫 인사의 의미도 있을테고 베트남이다보니 아무대로 조사관들의 기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 미리 부응하고자 하는 생각도 담겨 있을테고요. 하지만..정답은 세무조사 개시 첫날 절대로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조사관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낸 것도 없고 법인에 도착하자마자 인사 나누고 고작 냉커피 한잔 마시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법인에서 나에게 일정금액을 준다?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행동은 자칫 조사관들로 하여금 혹시 이 법인에 뭔가 숨기고 싶고 구린구석이 많은거 아닌가? 라는 적극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적당한 행동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나의 의도와 진심과는 상관없이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문화와 관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또는 여기가 베트남이다 보니.... 심지어는 이웃한 타 법인들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등등의 말은 나의 선부른 행동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나의 잘못된 판단에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평상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믿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반드시 실수나 에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관들 입장에서는 더운 날씨에 조사대상 법인에 찾아와 과거 수년치의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일일이 재계산을 하는 지극정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운도 따라줘야 하고 조사관들의 성향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법인 입장에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II 세법

05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5탄



들어가는 말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행태_조사관들의 접근방법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 조사개시 시점이 되면 적게는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조사관들이 법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각 법인마다 직전 세무조사를 언제 수검하였는지에 따라 보통 3년에서 길게는 7~8년간의 기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세무조사관들은 우리 법인에 대해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며,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각 법인들의 재무관련 정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부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쉽게 찾아서 조회를 해볼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재무정보는 과세당국인 지방세무서에서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별도의 조사활동을 한다기보다 각 법인들이 매 기간별로 신고를 하는 여러 세무신고 및 부속서류, 그리고 감사보고서 등의 세부자료를 제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특정 목적 하에서 특정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작위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목적이라 함은, 법인의 내부 직원의 투서 등 내부고발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법인의 활동을 통계적으로 관찰한 결과 매출이나 손익 등의 재무숫자의 변동성이 큰 경우 또는 수년간 지속적인 적자 및 결손을 시현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확장투자를 계속하거나 인건비 등의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등 몇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무작위로 선정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최근 수 년간 세무조사 목적상 방문한지 오래되었거나 최초 조사인 경우 선정대상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씀 중에 통상 세무조사를 3년 내지 5년 단위로 진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어떠한 규정에도 세무조사 기간단위를 명시적으로 정해 놓은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을 하시면 안되구요. 경험적으로는 법인 설립이 된 지 5년 정도 된 법인이 정기세무조사를 3번이나 수검한 적도 있고, 설립 후 10년이 지난 시간동안 단 한번도 정기세무조사를 수검한 적이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II 세법

05.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5탄

여하튼, 세무조사 목적으로 법인에 첫 방문을 하게 되면 통상 법인세, 부가세, 개인소득세 및 외국인계약자세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범위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각 세목 별로 간략하게 주된 이슈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한번 정리해봅니다.

(1) 법인세의 경우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시점
- ② 비용 등의 부인: OT의 노동법 위반(연간 200시간 또는 300시간)사항, 외부 조달 인력에 대한 서비스 비용, 감가상각비, BOM 초과분, 골프장 및 식당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 사업장(Business Site) 미등록 관련 지출, 취업규칙 또는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지출 등
- ③ 법인장 등 내부임직원에게 대한 대여시 적절한 수준의 이자 미수취

(2) 부가세의 경우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점
- ② 불법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
- ③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수취하였으나 기재사항 미비 및 오류
- ④ 결재대금 수취 및 지급시 계약서상 조건에 불부합

(3) 개인소득세의 경우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한국내 발생 소득(즉, 본사에서 수령하는 월급)에 대해 베트남내 미신고 및 미납부
- ② 복리후생 성격으로 근로자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수취한 대가이나 소득세 미신고 및 미납부

(4) 외국인계약자세의 경우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외국인계약자(대부분의 경우 한국 본사 또는 한국내 사업자)와 계약체결시 임시 Tax Code를 수령하기 위한 절차 미이행
- ② 외국인계약자세 적용 대상에 대해 간주법인세 및 간주부가세 오적용
- ③ 신고/납부 기한 미준수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II 세법

06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6탄



들어가는 말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행되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각 세목별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측면

법인세의 경우 여타 다른 세목들과 비교해서 제법 그 내용이나 복잡성이 있는 세목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수많은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더욱 세심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데요. 법인세 과세 즉 세무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법인세 인센티브’입니다. 과거 수년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외국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찾는 주된 이유 중에 분명히 법인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세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대세율’의 적용과 ‘법인세의 면제 또는 감면기간’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베트남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 특히, 저개발국가 내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법령 및 정책적인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효과로서 작용하는 것이 저렴한 인건비와 법인세 인센티브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무기로써 지난 십 수년 넘게 수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법인들이 온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안타까운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뿐만 아니라 여러 법령들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적용을 하는 과세당국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법인들 역시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파악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여러 저개발국가들에 대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즉, 돈이면 안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 라는 방식의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법령과 절차, 체계 등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가능한데 베트남에서는 안되는지 차이점에 대한 몰지각과 오히려 타 국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베트남 법인의 관리를 방해하고 엉뚱하게 진행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II 세법

06.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6탄

두 번째는 현지인 경리직원에게 대한 과도한 신뢰와 의존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법인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많은 법규정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역직원을 통해 경리장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 역시 여러 법인들에게서 목격이 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센티브의 경우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설령 법령의 해석이 다소 다르게 도출된다 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투자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해석/처분하는 과세당국의 행태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투자자들의 신규진출 및 추가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센티브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세 납부액의 경중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사항 가운데 하나이므로 법령 자체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예규나 판례와 같은 수많은 실제 사례를 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세무조사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주로 지적되는 사항은 우선 인센티브 적용시점의 조정입니다. 많은 법인에서 법인세 인센티브가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바로 적용 시작이거나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Total Taxable Income’이라고 규정에서는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식 기준으로 ‘각사업연도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인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또는 후)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계산서상 표시되는 이익 기준과는 다르며 법인세 신고서식에 표시되는 소득기준 중 하나이며 역시 법인세 신고서에 드러나는 과세표준과도 다른 이익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시면 안되겠습니다.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II 세법

07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7탄



들어가는 말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행되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각 세목별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측면

부가세의 경우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로서 각 법인이던 아니면 개인이던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세금이기도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부가세 세율이 10%로 동일하며 명칭도 부가가치세로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각 주별로 그 요율이 다양하며, 일본의 경우는 ‘기본 소비세율’이라는 명칭으로 10%로 적용 중이고, 영국은 부가가치세의 명칭으로 사용하되 세율은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부가 세라는 것은 그 명칭부터 세율까지 각기 다양하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가세는 어느 국가이던지 실물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종류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라는 것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의를 빌려오자면,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세의 계산방법이나 구체적으로 부가세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 부가세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이해를 한 분이라면 다음으로 갖게 되는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가세의 공제 및 환급입니다. 우선, 부가세는 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간접세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부가세는 결국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각 기업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조금 더 쉬운 일반인의 언어로 풀이를 하자면 마치 대학생때 MT가서 폭탄 돌리기 내지는 수건 돌리기 게임을 했듯이 누군가에게 나의 세금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II 세법

07.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7탄

종의 공급망 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이 이러한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는 와중에 최종 소비자에게 폭탄을 온전히 안겨주려면 여러 사업자들이 각 거래단계별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공제나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최종 소비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쳐 오를 것이기 때문에 각 거래단계별로 각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까지 합쳐서 소비경제가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부가세의 공제 또는 환급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공제’는 말 그대로 무엇에서 무엇을 차감, 즉 빼준다는 의미인 것이고, ‘환급’도 역시 말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가 되었건 환급이 되었건 부가세 과세 거래대상이 각 기업의 주목적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베트남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는 편인데요. 우선, 적용의 순서는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환급’을 나중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의 적용순서는 뒤집어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시는 부분은 공제도 가능하고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 기업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래건과 반대로 공제는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능한 거래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Value Added Tax (VAT)

$$\text{VAT to be paid to Government} = \text{Output VAT} - \text{Input VAT}$$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II 세법

08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8탄



들어가는말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부가세와 관련하여 부가세 공제 및 환급절차 그리고 세무조사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및 환급 등

부가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호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부가세의 공제 및 환급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제보다는 환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부가세의 납부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이며, 반대로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공제’라고 지칭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받지 않은 매입세액의 잔액은 다음번 부가세 신고 시 전기에서 이월되어 온 미공제매입세액이 해당기에 발생한 매입세액과 합쳐져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전기에서 환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의 잔액을 환급 받는다면, 다음번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 줄어들게지요. 즉, 전기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미동제매입세액이 ‘0’일테니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특정기간을 놓고 가정했을 때, 공제던 환급이던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공제보다 환급을 더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환급 받은 부가세환급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할 수도 있으며 또는 직원들 급여지급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등 선택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 대기업 계열에서 과거부터 오랜 기간 사업의 영역으로 활용하는 ‘XX 캐쉬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열사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캐쉬백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제도이지요. 여기서 만약, 일정 포인트가 쌓여 있는데,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A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A인터넷 쇼핑몰에는 하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나는 일정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타 쇼핑몰로 이동해서 현금을 결제하고

II
세법

08.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8탄

물건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A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하고 물건을 사는 게 나을까요?

따라서, 부가세의 공제 및 환급은 서로 완전히 별도의 개념은 아니고 연관성이 깊은 개념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왕 그러한 개념이라면 아무래도 나에게 선택지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환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등 각종 제 세금 등의 환급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므로 단순히 환급신청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그 환급조건들을 상당수준 까다롭게 규정화해두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일반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안타깝지만 일단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쉽게 안내 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내어 주기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규정상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자본금의 완납’입니다. 정관자본금의 납입은 법인을 처음 설립한 경우나 증자를 한 경우에 통상 집중하는 부분인데요. 자본금 납입과 같은 너무나 기본적인 당연한 조건들이 최근 일부 지역 세무서의 재량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법인이 경우 외국에서 베트남 자회사의 직접투자계좌로 납입된 자금은 당연히 외국환일 것이나, 이 외국환을 VND로 환산 시 투자등록증 내지 사업자등록증상 VND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본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겠다는 행정 처분이 종종 목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최초에 설립 시 정관자본금을 USD 1,000으로 정했고 현재 동/달러 환율이 VND 25,000 / USD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를 근거로 법인 설립이 끝나고 나면 수령하게 되는 투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USD 1,000 및 이를 환산한 VND 25,000,000이 함께 병기되어 기재가 됩니다. 신설법인 입장에서는 기업법에 따라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본금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으니 당연히 모법인에서는 기일안에 USD 1,000을 직접투자계좌로 송금하여 자본금을 납입하는 절차를 완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 송금 받은 날 당시의 동/달러 환율이

08.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8탄

변동되어 USD 24,999/ USD 1이라면 송금 받은 자본금을 VND 24,999,000로 보고 자본금이 미납되었으니 이를 근거로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USD 1,000 기준으로는 자본금 납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나 변동된 환율로 인하여 VND 기준으로는 자본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석하는 옳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를 빌미로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는 꼼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II
세법

09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9탄



들어가는말

이제 2024년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김없이 1년의 총결산을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요, 작년 못지않게 많은 법인들이 올 한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부디 2024년 결산마감을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부가세와 관련하여 부가세 공제 및 환급절차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및 환급 등_계속

부가세의 환급시 늘 세무서에서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세무조사로의 전환입니다. 즉, 부가세 환급은 국가에서 납세자인 각 법인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싫기 때문에 반대로 추징이 가능한 ‘세무조사’를 진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정기세무조사로의 전환 가능성 때문에 오랜기간 부가세 환급자체를 주저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정기세무조사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개시 30일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조사의 개요 및 목적과 범위 등을 기술하여 법인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조사개시 일주일 전에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경우와 같은 황당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 생활을 십 수년 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가지는 바로 부가세 환급 시 몇 %의 사례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는 세무서에서 몇 %를 요구하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등과 같은 내용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의 환급은 각 법인들 입장에서 내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돌려 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도 돌려 받는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즉, 몇 %의 사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환급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도 돌려 받는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즉, 몇 %의 사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환급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환급신청 행위자체도 불필요한 것인데, 베트남에서는 유독 환급 받는 것을 마치 무슨 엄청난 시혜를 받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며 유독 한국 투자기업들에서 자주

II 세법

09.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9탄

목격되고 회자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급한 성격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환급결정이 나면 규정에서 정한 일정 기일안에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말 연초 등 특정 시점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투자기업들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 받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일정 요율 또는 일정 수준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빨리 환급 받고자 하는 나름의 근거로서 은행의 1년간 정기예금 이자를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이 참 어폐가 있는 것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와 비교가 되려면 부가세 환급금을 동일한 정기예금 기간동안 은행에 묶어 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으면 그 돈은 법인의 운영비 지출, 본사 차입금 상환, 매입자금 변제 등 1~2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용이 된다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게 되고 세무서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상기 설명에서 ‘연말 연초 등 특정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각 법인들마다 특히 자금 소요가 많은 시점이 연말 연초이며 하필 이 시기에 베트남에서는 환급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아울러, 부가세의 환급은 각 지역별 세무서의 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State Budget이라고 하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는데요. 연말 연초에 세무서에 조기에 환급을 해달라는 목적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만, 아무리 세무서에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State Budget에 예산이 없으면 환급이 불가능하겠지요? 엉뚱한데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하는 집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회계법인이나 컨설팅사와 같은 서비스업체들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투자법인들이 부가세 환급을 이런 서비스업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환급신청 및 절차를 직접 진행해도 괜찮고 만약 직접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서비스업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서비스업체들이 각 지방 세무서 등과 공고히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법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베트남 정부기관과 사이가 돈독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체가 일도 빠르게 잘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즉각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기대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대가가 생각보다 많고 크다는 점이겠지요.

09.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9탄

아울러, 현금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 지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법인들 입장에서는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시는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만약, 서비스업체를 활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업무의 범위와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부가세 관련 사항 중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보다 내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인 2025년부터는 소득세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



통관

”



01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제도) 동향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1993년 처음 제정되어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며, 2020년도 개정 환경보호법이 2022년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습니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분리수거 의무의 강조, 환경 허가 및 환경 영향평가의 도입 등에 의의가 있으며 개정 환경보호법의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08/2022/ND-CP가 2022년도 1월 10일자로 발효하였습니다.

환경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베트남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08/2022/ND-CP에서는 일부 상품 및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의 포장재, 충전지, 윤활유, 타이어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시행령 상 규정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포장재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비료, 세제, 시멘트용 포장재
- 충전지 및 배터리
- 윤활유
- 타이어, 이너튜브
- 전기, 전자제품
- 교통수단

이러한 상품군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물품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활용을 이행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EPF)에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함으로써 재활용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물품별 재활용률은 시행령 부록에 제품별로 정해지며, 직접 재활용은 승인된 제조자 및 수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된 제3자의 고용 혹은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 이용을 통해 이행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부과금 납부으로써 이행을 대신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납부 금액 = 강제 재활용률(%) x 제조, 유통, 수입된 상품 및 포장재의 무게(kg) x 재생비용(Fs)

강제 재활용률의 경우는 현행 환경보호법 시행령 부록을 통해 제품별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생비용(Fs)의 경우 별도로 총리령을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생비용은 재활용을 위한 물품의 분류 및 수집 비용, 운송 비용, 재활용 활동 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해지는 비용을 의미하며, 2023년도 4월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제품군별 재생비용에 대한 결정 초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01.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동향

재활용 부과금 납부 시 수입자 및 제조자는 매년 3월 31일 전, 직전 년도 제조 및 유통, 수입 이력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단위로 부과금에 대한 신고 이행 및 4월 20일 전 일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4월 20일 및 10월 20일에 걸쳐 2회 분납이 가능하나, 1차 납부 시 전체 납부 금액의 최소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한 무게와 실제 무게 간 차이 발생 시, 다음 해 추가 납부 혹은 공제를 통한 정산이 이뤄집니다.

최근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782/TB-BTNBT 통보문을 통해 제조자 및 수입자가 실제 재활용률에 따라 재활용을 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재활용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조직의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재활용 부과금 납부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적용이 필요한 재생비용에 대한 총리령 초안 또한 유관 기관, 기업의 의견 취합 절차 중에 있어, 2024년도부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품목을 수입,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동향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환경보호법, 환경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시행규칙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전)FTA활용지원센터, 현)SPC GFS 박민설 관세사 -

02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정의와 활동 범위

최근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08/2015/ND-CP호 제 35조 제 1항 c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국수출입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c)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hiện diện/representative)가 없는 외국 상인이나 개인 간에 거래 되는 물품으로 외국 상인이 해당 물품을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한 것.

이 때 거래의 주체가 되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이나 개인”의 범주에 대해 이슈가 된 바 있다. 해당 용어의 정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상 해석은 다음과 같다.

※ 관세총국의 관세법 시행령 상 용어의 정의 ※

먼저, 관세총국은 빈증성 세관의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해외상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 2022년 10월, 공문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해외 상인”의 경우, 대외무역관리법 제 3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의 내국수출입 활동은 관세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세관법 제 18조 2항에 따라 세관 신고인은 제시된 신고 사항 및 서류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내국 수출 신고인 및 내국 수입 신고인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해외상인”의 결정과 관련된 의무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해외 상인 및 개인”의 수출권 및 수입권은 관련 정부 시행령 90/2007/ND-CP에 따른다.

※ 대외무역관리법 상 용어의 정의 ※

대외무역관리법 제 3조 5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상인”이란 베트남에서 투자, 통상, 기업과 관련된 법률에 규정된 형태에 따른 투자 및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 상인을 의미하며; 상업 및 기업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 따른 대표사무소 및 지사를 베트남에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상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써, 관세총국에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규정을 한 바 있다. “대표 사무소, 지점, 경제 조직 설립을 위한 투자가 있는 경우; 자본출자, 주식 또는 지분 매입;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BCC 계약(경영협력계약) 형태의 투자; 그 외 정부 규정에 따른 새로운 투자 형태 및 경제 조직”

02.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정의와 활동 범위

※ 수출권과 수입권의 정의 및 이행 조건 ※

이러한 외국 상인은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베트남 법률에 따른 수출권, 수입권을 가진다. 외국 상인이 가지는 수출권, 수입권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수출권”** : 베트남에서 수출을 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권리로, 수출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하기 위해서 수출 신고서 상 이름을 기재할 권리를 포함한다. 수출권은 달리 베트남 법령 혹은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 협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상 베트남에서 수출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유통망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제한다.
- **“수입권”** : 베트남에서 해당 물품을 유통할 권리가 있는 무역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이다; 수입권은 수입 관련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절차 이행을 위해 수입신고서 상 이름을 기재할 권리를 포함한다. 수입권은 달리 베트남 법령 혹은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 협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상 베트남에서 수출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유통망을 구성하거나, 참여하는 권리를 배제한다.

다만 이러한 수출권 및 수입권 이행을 위해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해외 상인은 별도로 수입권 및 수출권 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

시사점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이나 개인”의 범주에 대해 관세총국에서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베트남에 투자를 한 대부분의 기업이 내국수출입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만일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이나 개인”의 형태로 베트남 내 보세창고 및 대리인을 이용한 수출입 거래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에 수출권 및 수입권 이행에 대한 등록증 발급 및 해외 계약자세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세총국 4146호, 4357호 및 8739호 공문 내용 및 관련 법령 종합)

- 전)FTA활용지원센터, 현)SPC GFS 박민설 관세사 -

III

통관

03

수출입물품 비특혜원산지 규정 개정



베트남은 원산지 증명서 관련 규정을 대외무역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법에는 원산지 증명 방식 및 원산지 조사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 후 세부 내용은 정부시행령 및 산업무역부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31/2018/ND-CP)은 수출입물품 원산지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의 원칙은 원산지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특혜 원산지 규정(2장) ※

수출입 물품에 대해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 조약 등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혜택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결정은 해당 국제 조약 상 규정된 바에 따른다. 즉, 베트남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협약 등에 따른 우대 관세율 적용 등을 위해 원산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FTA 협약 상 원산지 결정 기준 등에 따라 원산지 결정 및 증명서 발행 등이 이뤄진다.

※ 비특혜 원산지 규정(3장) ※

수출입 물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의 적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무역 쿼터와 같이 관세 특혜가 아닌 목적에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완전 생산이 되거나, 완전 생산이 아닐 경우에는 물품별로 산업무역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게 된다.

2)와 같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존에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05/2018/TT-BCT 부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code 2022 개정에 따라 해당 부록 또한 44/2023/TT-BCT 부록으로 개정이 되었다. 해당 개정 원산지 결정기준은 2024년 2월 15일자로 발효한다.

최근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개정 시행 규칙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재확인 필요하다. 다만 유의가 필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입품목에 대한 것으로,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되는 세부 시행규칙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03. 수출입물품 비특혜원산지 규정 개정

따라서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입장에서 특혜 원산지/비특혜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칙 및 수출입품목/국내 유통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칙에 대한 유의 및 구분 관리가 필요하다.

- 전)FTA활용지원센터, 현)SPC GFS 박민설 관세사 -

III

통관

04

농업농촌개발부 전문검사 대상 물품 축소



베트남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으로 수입 물품이 사전에 전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있다. 전문검사란 수출, 수입 및 환적 물품이 국가 기술 규정이나 기준 혹은 문화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써, 관세법 시행 규칙에서 품질 관련 검사 필요 물품, 의료분야 물품, 문화 분야 물품, 동식물 검역 필요 물품, 식품 안전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전문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 베트남 각 부처 및 기관들은 세부적으로 전문 검사 필요 물품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목록 상 물품들에 대해 베트남 세관 당국은 통관 과정에서 서류 혹은 실물 검사로써 수입 물품이 국가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즉, 수입 과정에서의 강제 인증, 유통 등록, 제품 등록, 검역, 식품검사 등이 이러한 관세법 상 “전문 검사 대상”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만일 전문 검사 미흡 시 수입 통관 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베트남은 2024년 1월 5일자 정부 시행령 02/NQ-CP를 통해 2024년도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영 환경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국가 전문검사 활동의 개선 및 국가 싱글 윈도우 시스템의 효과 증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전문검사 대상 목록에 대한 시행 규칙의 개정이 예상되며, 최근 농업농촌개발부의 경우도 전문 검사 대상 물품의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 농업농촌개발부의 전문검사 대상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 (11/2021/TT-BNNPTNT) 부록 2에서 전문 검사 대상 HS code 및 물품 명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2024년도 3월 20일자로 발효하는 01/2024/TT-BNNPTNT가 이를 대체하였다. 큰 변화 사항으로 수산물 검역 대상 4개 품목 및 식물 검역 대상 약 80여개 품목이 전문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사전 통관 검사 대상이었던 수생 동물 사료, 농기계류 등이 통관 사후 검사 대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시행 규칙 상 전문 검사에는 1) 동물 및 식물 검역 2) 품질 검사 대상 3) 식품안전 검사 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HS code에 따라 돼지고기나 신선란과 같이 1)의 동물 검역과 3)의 식품 안전 검사가 동시에 요구되는 물품/셀레늄과 같이 품질 검사만 요구되는 물품/균질화한 식품과 같이 식품안전검사만 요구되는 물품 등 중복 검사가 요구될 수 있어, 수입 전 HS code에 따른 검사 요구 사항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전)FTA활용지원센터, 현)SPC GFS 박민설 관세사 -

05

통관 분야에서의 업무 위험 관리 규정 개정 사항



한국 관세청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 준수 정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별로 법규 준수의 정도를 평가한 점수를 내어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전반적인 관세행정 법규 준수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유사한 제도로 재무부 시행규칙인 ‘통관 분야 위험 관리에 대한 규칙(81/2019/TT-BTC, 2019.11.15)’에서 세관 신고인 및 통관 분야 활동 법인에 대한 법규준수도와 위험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점수로서 책정이 아닌, 등급으로써 구분 관리되고 있다.

※ 법규준수도 (Compliance level) ※

수출, 수입, 출입국 및 환적 활동과 관련하여 세관 신고인의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세관 당국의 평가 및 분류 결과를 의미. 등급별 구분은 해당 시행규칙 부록의 등급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 대표자의 법규 위반 여부, 신고 건 당 행정 위반 비율, 체납 여부, 세관과의 협력 여부, 기업의 활동기간, 1년 간의 신고 건수 혹은 수출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총 5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AEO 기업
- 2등급: 법규 준수도 아주 높은 기업
- 3등급: 법규 준수도 높은 기업
- 4등급: 법규준수도 중간 기업
- 5등급: 법규 미준수 기업

※ 위험도(Risk level) ※

기업별 위험의 빈도 및 결과를 조합하여 결정하는 등급. 위험도는 법규준수도와 함께 설립 기간, 주요 활동지, 직원수와 같은 기업 정보와 주요 품목, 매출액, 세관 검사 결과와 같은 기업 활동 이력, 행정 처벌 이력, 그 외 위법 사항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총 9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AEO 기업
- 2등급: 위험도가 아주 낮은 신고인

05. 통관 분야에서의 업무 위험 관리 규정 개정 사항

- 3등급: 위험도가 낮은 신고인
- 4등급: 위험도가 중간인 신고인
- 5등급: 위험도가 높은 신고인
- 6등급: 위험도가 아주 높은 신고인
- 7등급: 평가일 기준 365일 이내에 수출입 활동이 없었으며, 세관 분야 행정 처벌이 없는 기업
- 8등급: 평가일 기준 365일 이내에 수출입 활동이 없었으며, 9등급에 해당하는 행정 처벌 이외의 행정 처벌을 받은 기업
- 9등급: 평가일 기준 365일 이내에 수출입 활동이 없었으며, 특정한 행정 처벌(밀수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이러한 법규준수도 및 위험도 등급 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세관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 통관 및 물품 적재, 보관 등 과정에서 검사 여부 (통관 시 Red, Yellow, Green 등 결정기준)
- 통관 사후 심사 진행 여부
- 환급 서류 검사 여부
- 전문 검사 및 분석 시 샘플 채취 결정 등

특히 해당 규칙이 2024년도 1월 29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2024년도 3월 15일부터 발효 예정이다. 해당 시행규칙으로 법규준수도 및 위험도 등급별 명칭의 일부 변화와 등급별 기준의 개정이 일부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에 유의가 필요하다.

- 폐품 및 폐기물 검사 방식 결정 시 위험도 및 법규 준수도 참조: 기업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직접 참여 검사 진행,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 기타 방식 (원격 감시) 등으로 대체
- 환급 및 충당 결정 방식 결정 시 위험도 및 법규 준수도에 따라 상이: 기업 위험도가 높은 경우 사전 검사 후 환급 진행,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 사전 환급 이후 사후 검사 진행

- 전)FTA활용지원센터, 현)SPC GFS 박민설 관세사 -

06

규제물질 포함 제품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오존층 보존과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을 위한 자원환경법 시행령 (06/2022/ND-CP)이 2022년도 1월 7일에 발표되었다. 해당 시행령 상 명시된 HCFCs, HFCs와 같은 규제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 자원환경부는 세부 시행규칙 01/2022/TT-BTNMT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시행규칙에는 시행령 상 사용 등 제한 대상이 되는 물질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었다.

해당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상에는 관련 규제 물질, 장비 등의 수입 시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한다는 의무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관세총국에서 수입 통관 시 관련 수출입자들의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자원환경법 시행규칙 01/2022/TT-BTNMT 부록 3.1에서는 생산, 수입, 소비가 금지된 물질을 명시하고 있으며, HS 코드 기준 제 2903호 및 제 3927호에 해당하는 HCFC 가스 및 CFC 가스가 해당한다. 01/2022/TT-BTNMT 부록 3.2에는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물질로서 규제가 필요한 물질들로 메틸브로마이드 등의 물질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 중 메틸브로마이드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부의 수출입 허가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HCFC 가스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수입 쿼터에 따른 수입 제한이 적용된다. 동일 시행규칙 부록 3.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수입쿼터제가 적용된다.

부록 3.4에는 규제물질을 포함하거나, 규제물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상품, 설비, 제품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공기조절기, 분사장비, 및 일부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그 중 해당 물질 일부가 수정, 보완된 19/2023/TT-BTNMT가 2023년 11월 15일에 발표되었으며, 이 중 부록 3.1과 3.4에 포함된 일부 물품의 명세가 일부 수정되었다.

관세총국은 이러한 규제물질 및 규제 물질을 포함하는 상품, 장비, 제품들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규칙 01/2022/TT-BTNMT 상 명시된 통관 관련 정보 신고 의무 이행을 독려할 것을 각 시, 성급 세관에 알렸다. 따라서 이들 물질 및 상품, 장비 등을 수출입하는 당사자들은 수출입 통관 시 규제물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추후 관련 업체의 통관 과정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 전)FTA활용지원센터, 현)SPC GFS 박민설 관세사 -

III

통관

07

베트남 건강기능식품의 구분과 통관



Q.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 합니다. 어떤 종류의 주의 사항이 있으며 통관 시 이슈는 무엇인가요?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제품에 대해 제품 등록을 거쳐야 하는지, 제품 일반 신고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때 일반 신고를 하였더라도 통관 당시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세관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식품안전법 상 건강 기능 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안전법(55/2010/QH2) 제2조 23항

“건강기능식품(*Thuc pham chuc nang*)”은 인체의 기능을 돕고, 신체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주며, 저항력을 높이고,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보충식품(*Thuc pham bo sung*), 건강보호식품(*Thuc pham bao ve suc khoe*), 의학적 영양식품(*Thuc pham dinh duong y hoc*)을 포함한다.

베트남 정부 부처 중 건강기능식품은 보건부 관할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보건부에 제품 등록(*Dang ky*) 혹은 제품 자가 신고(*Cong bo*)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물성, 동물성 성분에서 유래한 제품, 유제품 성분에서 유래한 제품과 같이 원료가 농업 농촌개발부나 산업무역부의 관할 대상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된다면 보건부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때 건강기능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각 식품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정의	근거
보충식품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활성물질과 같은 미량영양소 및 건강에 유익한 요소를 보충한 일반 식품	보건부 규정 (43/2014/TT-BYT)

07. 베트남 건강기능식품의 구분과 통관

명칭	정의	근거
건강 보호식품	- 인체의 기능의 유지, 강화, 개선과 질병 위험 감소를 위해 일일 식단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물질 및 혼합물 포함: a)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물학적 활성 물질 b) 추출물, 분리/농축/변형된 동물, 광물, 식물성 천연 유래 물질 c) a)와 b)에 언급된 성분들의 혼합물에서 유래한 성분 - 캡슐, 정제, 과립, 분말, 액체 및 기타 제형과 같은 가공 형태로 제시되며 소량으로 나눠진 단위로 투여	식품안전법 시행령 (15/2018/ND-CP)
의학적 영양식품	특수 의료 목적에서 경구 또는 흡입기로 섭취하는 식품의 일종으로 환자의 식이 조절을 위해 규정에 따라 의료진 감독하에 사용하는 식품	식품안전법 시행령 (15/2018/ND-CP)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의 건강기능식품 중 건강보호식품과 의학적 영양 식품은 제품 등록 (Dang ky) 대상에 해당합니다(시행령 3장 6조 1항). 제품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서류로서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한 GMP 서류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GMP 서류 구비가 어려운 수출자들에게 베트남 수출 과정에서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 보충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품에 대해 이행되는 자가 신고로서 제품 등록이 가능하나, 아직 보충 식품과 건강보호식품 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최근 일반 보충식품으로서 등록된 물품에 대해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자가신고가 아닌 등록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홍삼, 녹용과 같은 추출물 함유 제품에 대해 빈번히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출자들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됩니다.

- 전)FTA활용지원센터, 현)SPC GFS 박민설 관세사 -



베트남 관세총국은 2023년 5월 31일 수출입상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33/2023/TT-BTC) 최초 수입신고 시 면세용도로 수입된 원재료의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시행규칙(38/2018/TT-BTC)에 따르면 최초 수입 시 면세원재료로 수입한 후 내수용으로 용도변경신고 후 부과된 관세에 대해 FTA 사후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물품이 제조 가공되지 않고 수입당시의 원상태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도변경된 물품의 FTA 사후적용 (舊 시행규칙 38/2018/TT-BTC 제 17조)>

(전략)

FTA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 상품은 반드시 최초 세관 등록 시점 이후로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후략)

개정된 시행 규칙(33/2023/TT-BTC)에서는 제 13조에서 물품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의 FTA 사후적용 절차를 규정하며, 제조, 가공되지 않고 수입 당시 원상태일 것을 요구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관세를 면제받은 수출용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된 이후 용도변경 신고를 하더라도 용도변경 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을 통해 FTA 사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사항으로 제출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최초의 수입신고 시에도 유효한 상태였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존 면세 원재료(E31 등)를 내수 판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면세 원재료가 제조 가공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O 추가 제출(FTA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시점 및 용도변경 시 원산지증명서 사후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이하와 같습니다.

08. 면세 원재료 용도 변경 시 FTA 적용 여부

<A42 용도 변경 신고 시점 (시행규칙 39/2018/TT-BTC 1조 10항)>

- 면세 원재료 원상태에서 용도 변경 신고 가능
- 면세 원재료를 가지고 제조 및 가공한 이후 용도 변경 신고 가능 (다만, 면세 원재료와 제조가공 후 제품을 동일 신고서 내에 구분하여 신고 필요)

<용도 변경 시 C/O 추가 제출 규정 (시행규칙 33/2023/TT-BTC 13조 1항 a호)>

1. 세관 신고인이 세관등록 절차를 밟을 때 원산지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상황에서 특별 우대관세율(FTA 세율)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a) 물품이 용도변경 되는 경우(Repurpose). (중략)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공급품으로서, 수리 후 반출되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국내 판매되는 경우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최초 수입신고시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후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FTA 적용이 거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입 후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발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FTA활용지원센터 정영균 관세사 -

III

통관

09

베트남 관세총국의
EPE 관련 문의 공문 요약

베트남 관세총국은 7월 22일 한국중소기업연합회(코참)으로부터 EPE 기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9월 4일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해당 공문 내용 정리를 통해 EPE기업 운영 관련된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EPE기업이 현지 기업에 기계, 장비를 대여하거나 부품을 반입하여
수리 등을 하는 경우 ※

- 2023년 관세청 공문 300/TCHQ-CCHDH 에 따라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EPE 기업은 임시 수출절차를 거치고, 국내기업은 임시수입 절차를 수행한 뒤, 대여가 종료되고 국내기업이 재수출 절차를 거쳐 EPE 기업으로 공급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 다만 임대 후 사용과정에서 기계, 장비가 수리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최초로 수출된 물품과 달라진 경우라면,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수리,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계 수리 후 재수입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비과세 기계 및 장비를 폐기하고 일부 부품을 재사용하려는 경우 ※

- 베트남 관세총국은 이에 대해 원론적으로 기계 및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시행규칙 38/2015/TT-BTC 제 79조에 따라 폐기하고, 수입되는 물품은 동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EPE기업이 폐기 후 잔여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부품, 장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 기술하여 관세청 및 세관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 EPE 기업이 간접재료 및 소비재를 국내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

- 이 사례의 경우 공급되는 물품의 종류와 세관별 통관절차와 지침이 각자 상이하기 때문에 관세총국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곤란함을 회신하였음.
- 다만 원론적으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 16조 제6항에 따라 EPE가 간접재료 및 소비재를 국내기업에 공급하였어도 가공제품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지 않거나 가공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며, 정상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을 회신

09. 베트남 관세총국의 EPE 관련 문의 공문 요약

- 상기 회신 공문의 관세총국 의견을 요약하자면 EPE기업의 면세 대상 수입물품은 어디까지나 베트남 내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총국은 1. 의견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면세 물품의 “동일성”을 중시하며, 베트남 국내기업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 개조를 동일성 훼손으로 보아 동일 물품의 재수출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의견에서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폐기하더라도, 잔여 부산물은 별도로 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사용 후 폐기물의 처리도 정식통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수출물품 생산 외 과정에 소모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과 세관, 관세총국 지침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물품은 사후관리 미비 시 추징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FTA활용지원센터 정영균 관세사 -

III

통관

10

베트남 수출을 위한 라벨링 제도 안내



베트남에서 물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43/2017/ND-CP(상품라벨에 관한 시행령) 및 111/2021/ND-CP(상품라벨에 관한 시행령 일부 수정안), 05/2019/TT-BKHCN (상품 라벨링 시행령 이행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적절한 라벨링 부착이 필수적이기에 라벨링 규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품라벨에 관한 시행령 제 1, 2조에서는 라벨링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환적, 경매물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베트남에서 생산 및 거래, 수입되는 모든 품목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정 시행령 1조 5항 및 시행령 제 10조에서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착해야 할 라벨링의 내용과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부착되어야 하는 내용 및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 이후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하기 전 2차 라벨의 부착이 필요합니다.

1.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제품 라벨에는 다음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a) 상품명
 - b) 상품에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 c) 상품의 원산지.
 - d) 부록 I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명시된 각 상품 유형의 특성에 따른 필수 내용
2.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본 라벨에는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외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a) 상품명
 - b) 상품의 원산지.
 - c) 생산 조직이나 개인, 해외 상품에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 또는 약칭.
 - c1) 상품의 원래 라벨에 제조 조직이나 개인, 해외 상품에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의 전체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품에 첨부된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c2) 본 조 2항 a, b, c항에 규정된 외국어 원본 라벨이 부착된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의 경우,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보관 창고로 운송한 후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어로 기재된 상품 라벨을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 상품 라벨링 개정 시행령 1조 5항 및 시행령 제 10조

10. 베트남 수출을 위한 라벨링 제도 안내

이러한 상품 라벨의 위치와 표기 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품라벨에 관한 시행령(43/2017/ND-CP)

제4조. 제품 라벨의 위치

1. 상품 라벨은 상품의 세부 사항을 분해하지 않고도 라벨의 규정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상품 및 상업적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외부 포장을 열 수 없거나 열 수 없는 경우 외부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는 필수 내용이 완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품 라벨링 시행령 이행에 관한 세부시행규칙(05/2019/TT-BKHCHN)

제4조. 상품 라벨의 위치

1. 라벨의 필수 정보는 완전히 표시될 필요는 없으며 상품의 다른 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정보는 상품의 어떤 부분을 분해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정보는 상품 라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2. 1차포장 및 외부포장이 모두 포함된 물품
 - a) 시장에서 판매 시 1차포장 단위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라벨링
 - b) 외부포장상태, 1차포장단위 소규모 물품의 포장의 경우 1차포장 및 외부포장 전부 라벨링 필요
3. 제품 내부의 표시내용을 볼 수 있도록 외부포장이 투명한 경우에는 외부포장에 라벨링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품 라벨링 시행령 이행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에는 상품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성분명의 표시방법, 주소 기재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세부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된 경우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세관에서는 라벨링 관련 보수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출하시기 전에 적합한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물품을 수출하는지 항상 사전 확인을 하여 수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엄진용 회계사
전)FTA활용지원센터, 현)SPC GFS	박민설 관세사
FTA활용지원센터	정영균 관세사

KOTRA자료 24-110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발 행 인	강경성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4년 1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 (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84-24-3946-0511)
I S S N	3022-2826 / 3022-2834(e-ISSN)

※ 개발 칼럼의 내용은 코트라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 칼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 202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